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농어촌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등 〉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0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 단축	3
2. 농어촌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6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1

I. 개요

1. 임종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10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종특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7. 22.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최근 인구감소 추세와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 보건복지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의 경우 그 실시 주기가 5년인데, 이는 다소 길어서 농어촌의 인구구조 및 보건복지 수요 등의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어촌 거주 가구 중에서 아동·노인·장애인 가구, 가족돌봄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응급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있더라도 응급상황에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노인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 단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 ----- -----3 년-----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해당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4,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등 보건의료 및 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현행 5년의 조사 주기로는 농어촌의 인구구조 및 보건복지 수요 등 변화하는 여건을 적시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를 때, 고령화, 인구감소 및 보건복지 수요의 변화 등 농어촌의 여건 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최신의 실태 자료를 농어촌 보건복지정책의 수립·보완에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상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년마다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종합조사 사이의 연도에는 조사내용을 나누어 매년 부문별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 조사별 주요 내용 >

구분	조사 부문		조사년도	조사 대상
종합조사 (5년 주기)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지역공동체, 경제활동	(공통) 생활전반 * 가구원 정보	2023	농어촌 2,800가구 도시 1,200 가구 (전체 4,000가구)
부문별 조사 (종합조사가 없는 4년간 매년 실시)	기초생활여건,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환경·경관, 안전		2024	농어촌 4,000가구
	의료, 복지, 교육, 여가, 경제활동		2025	
	기초생활여건,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환경·경관, 안전		2026	
	의료, 복지, 교육, 여가, 경제활동		2027	

자료: 보건복지부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나이·학력·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 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해당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및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하여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므로³⁾⁴⁾, 동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다른 조사(부문별 심층조사, 농어업인 복지 실태조사, 농촌생활지표조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농촌생활지표조사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2013년부터 종전의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되고 있음.

2. 농어촌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 가구, 가족돌봄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이하 “안전사고 취약가구”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주거시설에서의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등의 조치와 연계하는 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안전사고 취약가구 구성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안전사고 취약가구 구성원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안전사고 취약가구의 구성원 본인 또는 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또는 그 밖에 노인·장애인 돌봄 전문인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해당 가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2.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의 내용·기준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 내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화재, 응급호출, 활동량 이상 등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연계하여 신속한 구조·구급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따른 가내 설치 기기 >



자료: 보건복지부

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⁵⁾, 독거노인과 질환

5)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通報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1인 가구인 경우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 거동불편 등이 있는 노인 2인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 응급상황 발생 위험과 상시 보호 필요성이 높은 노인·장애인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농어촌에 거주하는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전사고 취약가구를 아동·노인·장애인 가구, 가족돌봄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가구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①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③ 이들과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응급의료취약지⁶⁾ 98개 시·군·구 중 79개가 인구감소지역과 중복되고, 농어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4년 1,209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하는 등⁷⁾, 농어촌 지역은 의료·응급대응 자원에 대한 접근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응급대응 여건을 고려할 때, 개정안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1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에 따라 지정된 기초 지방자치단체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장관, 의료취약지 병원 찾아 애로사항 청취」(2026.1.21.), 「의료취약지 중심 공보의 우선 배치, 순회진료·비대면진료 확대」(2026.3.13.)를 참조.

은 가정 내 응급상황을 조기에 감지하여 구조·구급체계와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농어촌의 응급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안전사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제3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는바, 장비 및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응급 위험도가 보다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예산 확보,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주기) 현행 「농어촌복지법」상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질법」상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5년 주기의 종합조사와 매년 부문별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할 경우 유사 조사와의 중복 및 추가적인 행정·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 법정계획이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농어촌의 고령화 및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 일정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할 경우 실제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장비·인력 등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도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